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
나. 발의자: 최인순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인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바,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·제작·유통·소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보조금 지원 및 위탁(안 제4조)
- 지도 및 감독(안 제5조)
- 준용,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제정안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조·유통·소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주요 내용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,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집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할 수 있음을 명시 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, 2021년 9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, 동법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음.

- 현재까지 탄소중립 정책은 주로 산업, 교통, 에너지 등 물리적 감축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, 문화예술 분야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, 전시, 공연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의 가치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영역임.

- 이러한 배경하에 본 제정안에서 구청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·추진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

조례안

(최인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34
--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 : 2025. 11. .
발의자 : 최인순 · 이순우 · 이성수
임현호 · 이규선 · 박현우
정선희 의원 (7인)

1. 제안이유

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바, 문화예술 활동의 기획·제작·유통·소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 지원 및 위탁(안 제4조)
- 라. 지도 및 감독(안 제5조)
- 마. 준용,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

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탄소중립”이란 대기 중에 배출 ·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(零)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.
2. “문화예술”이란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, 정신적,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(印象), 견문,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.
3. “문화시설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“문화예술 단체”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,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·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4조(보조금 지원 및 위탁)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

2.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

3.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·제작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지도 및 감독)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,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